

# 단체표준 인증심사 기준

해당표준번호

SPS-KFGIA 003-2005

---

해당표준명

강화유리의 히트속 테스트 방법

---

제정연월일

2013 년 04 월 13 일

---

개정연월일

2021 년 03 월 23 일

---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 I. 제품분야

## 1. 일반 심사기준

### 가. 품질경영

심사사항	구비요건
1)사내표준화·품질 경영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책임자는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li> <li>기업의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은 단체표준을 기반으로 회사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고 회사 전체 차원에서 적용해야 한다.</li> <li>품질경영의 추진계획은 해당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의 요구 수준이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입안하여야 한다.</li> </ul>
2)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품질경영을 총괄하는 품질경영부서(임직원 10인 이하 기업은 품질관리담당자)는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li> <li>제안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품질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활동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을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li> </ul>
비고	

### 나. 자재 관리

심사사항 주요자재명	구비요건			
	검사항목	자재품질기준	검사방법	이행사항
표준에서 정한 주요 자재를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 1. 판유리 1)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2)접합유리 3)강화유리 4)열선흘수 판유리 5)열선편사유리 6)저방사유리	표준에 따른 주요 자재명 및 자재별 검사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자재관리 목록(원·부자재, 부품 등)은 인증기관에 심사 전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 받아야 하며, 심사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의 품질기준 및 안전성은 생산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자재의 검사방법 및 항목은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품질 관리기법을 활용하여 정하여야 한다.	사내표준에 의하여 자재를 인수할 때의 품질검사(이하 이표에서 "인수검사"라 한다) 및 자재관리를 하고, 자재를 관리하는 자가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비고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또는 단체표준 표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또는 단체표준 표시품,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에는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부품을 자체 제조하는 경우에는 공정관리 기록 등으로 인수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2.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한 경우, 인증기관은 해당 제품이 단체표준에 현저히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다. 공정·제조설비 관리

심사사항 주요설비명	구비요건			
	검사 또는 관리 항목	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	이행사항	제조작업표준
<p>표준에서 정한 주요 공정을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p> <p><b>1. 공정</b> 1)적 재, 2)가 열, 3)냉 각, 4)겉모양, 5)표 시</p> <p><b>2. 제조설비</b> 1)적재설비, 2)히속설비, 3)마크표시설비</p>	<p>단체표준에 따른 주요 공정명 및 공정별 검사 또는 관리항목,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p>	<p>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을 규정 하고 있어야 한다.</p>	<p>사내표준에 따라 검사.관리를 하여 그 기록 을 활용 하고 공정관리자가 규정대로 실시 할 수 있어야 한다.</p>	<p>각 공정에 대하여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 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p>
<p><b>비 고</b></p> <p>1. 공정관리 및 제품의 품질관리는 히속 테스트 시험결과 보고서로 대체 할 수 있다.</p> <p>2.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p> <p>3.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p>				

## 라. 제품 관리

심사사항 검사 항목	구비요건			
	제품 설계 및 개발 절차계획	제품 품질검사 항목	검사방법	이행사항
<p>표준에서 정한 품질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p> <p>1. 유리 외관 품질 2. 제품 파손 유무</p>	<p>제품의 설계 및 개발 절차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p>	<p>제품의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해야 하고, 제품의 품질기준은 단체표준에서 정한 품질검사 항목을 포함하여 그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p>	<p>제품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단체표준에 규정된 적절한 검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p>	<p>가) 사내 표준에 따라 제품의 설계 및 개발을 이행하고, 관련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유지해야 한다.</p> <p>나)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 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정 개선 및 제품의 품질 향상에 활용해야 한다.</p> <p>다) 제품시험 검사자가 단체표준 및 사내표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p>
<p><b>비 고</b></p> <p>1. 심사원은 제품 시험검사자의 시험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의 주요 검사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p>				

## 마. 시험·검사설비 관리

주요설비명	구 비 요 건
<p>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주요 시험·검사 설비를 포함하여 시험·검사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p> <p>1.치수측정기 2.온도측정(센서)기 3.온도기록기 4.시간기록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단체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 설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설비의 정밀도,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 측정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검사설비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li> <li>○ 정밀도 및 정확도를 시험·검사하기 위하여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 관리자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li> <li>○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않아, 외부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용계약을 체결 및 외부공인기관을 이용한 의뢰 시험을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li> </ul>
<p><b>비 고</b></p>	

## 바. 소비자 보호 및 환경·자원 관리

심사사항	구비요건
<p>1) 소비자 보호</p> <p>2) 환경관리</p> <p>3) 자원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례를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li> <li>○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보상에 대해 처리방법을 규정해야 한다.</li>   <li>○ 단체표준에 따른 제품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li> <li>○ 청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 회사 전체적으로 실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li> <li>○ 작업능률의 향상과 종업원의 안전 및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을 갖추어야 한다.</li>   <li>○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종업원에게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생산·품질경영부서의 경영간부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실적이 있어야 한다.</li> <li>○ 업종과 규모에 적합하고, 품질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격 있는 품질관리 담당자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li> <li>○ 품질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li> <li>- 사내표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총괄</li> <li>- 상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 평가</li> <li>-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li> <li>-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li> <li>- 종업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li> <li>-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li> <li>-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li> <li>-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및 시험업무 관장</li> </ul> </li> </ul>
비고	

**사.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번호	검사항목	로트의 크기	시료의 크기(n)	판정기준		비고
				Ac	Re	
1	겉모양	인증구분별 재고량	1	0	1	외부시험
2	히속테스트		1	0	1	"
3	치 수		1	0	1	"
4	표 시		1	0	1	"
비고 :						

**아.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구분**

별표 4. 인증받은자 의 처분 3. 표준별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의 품목별 세부사항에 따른다.

**자. 단체표준 인증표시**

상품의 단위	표시 장소	표시 방법	표시 내용
1. 매 제품 마다	제품표면(모서리)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엣칭, 스프레이, 구워붙임 등)	1. 단체표준 표시도표 : 단체표준마크 지름 5mm이상 30mm 이하 2.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3. 제조국의 국명(국산품의 경우 표시를 생략해도 됨)
2. 매 포장 또는 파레트 마다	잘보이는 곳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인쇄, 압인, 증지 등)	1. 단체표준 표시도표 : 단체표준마크 지름 10mm이상 30mm 이하 2. 단체표준명 및 표준번호 3. 단체표준 인증번호 4. 제조년월일 5.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6. 인증단체명 7. 제조국의 국명(국산품의 경우 표시를 생략해도 됨)

**차. 제품의 인증구분**

단체표준번호	표준명	종 류
SPS-KFGIA-003- 2005	강화유리의 히속테스트 방법	-
비고 :		

## 카.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 1. 시료채취 내역

표준 번호	품 목	재고량 (m <sup>3</sup> )	시료 크기	시료수 (시료번호)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SPS-KFGIA 003-2005	강화유리의 히속테스트 방법	17	-시료크기: n=1	20매 ( DJ-5 )	※ SPS-KFGIA-003-2005:2012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에 따름 ※ 시료치수(mm) DJ-5 : ※호칭 두께 : 8 mm ※재료판유리두께 : 8 mm ※공시체 규격 : (610 X 610 x 8) mm : 12매, (1 930 X 864 x 8) mm : 8매 ※ 단 표시사항은 제외 ※시료채취자 : (인)

2. 샘플링(시료 채취) 방식 : KS Q ISO 24153(랜덤샘플링 및 랜덤화 절차)에 따름.

### 3. 공시체 제작방법

- 공시체 제작방법 : SPS-KFGIA-003-2005:2012 5.1항에 따름
- 공시체 규격 : (610 X 610 x ) mm : 12매, (1 930 X 864 x ) mm : 8매
- 제 작 자 :

4. 시험의뢰처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위와 같이 시료채취 및 시험 의뢰하였음.

20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 회 자

한국판유리창호협회 : (인) 대 표 자 : (인)

한국판유리창호협회 : (인) 품질관리담당자 : (인)

# 품질시험의뢰서

## (OO심사)

처리기간

30일(규격에 시험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로 한다)

수신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제목 : 단체표준 인증 품질시험 의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43조 단체표준 인증심사 규정에 의하여 제품시험을 다음과 같이 의뢰 하오니 관련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의하여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표준 번호	품목	시료 크기	시료수 (시료번호)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SPS-KFGIA 003-2005	강화유리의 히속테스트 방법	시료크기 n=1	20매 ( DJ-5 )	※ SPS-KFGIA 003-2005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에 따름  ※ 시료치수(mm)  DJ-5 : ※호칭 두께 : 8 mm, ※재료판유리두께 : 8 mm ※공시체 규격 : ( 610 X 610 x 8 ) mm : 12매, ( 1 930 X 864 x 8 ) mm : 8매  ※ 단 표시사항은 제외

주 : 시험기관은 시료 접수시 시료의 상단에 표시된 봉인지의 날인과 이 품질시험 의뢰서의 날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

20 년 월 일

의뢰인

소속 : 한국판유리창호협회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61 에이스하이앤드타워2차 302호

전화번호 : (02) 3453-7991

직위 : 인증심사원

성명 : (인)

첨부물 : 시험분석 시료

## 2. 단체표준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

가. 단체표준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은 별지 제1호 일반심사기준에 다음의 1)부터 6)까지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단체가 단체표준에 따른 품목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 1) 품목별 특성을 고려할 때 별지 제1호 인증심사기준 중에서 일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
- 2) 품목별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절차·방법 등 단체표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 3)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
- 4)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 5) 제품인증표시 방법
- 6) 제품의 인증구분(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등

나. 단체표준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의 표지에는 1)에서 4)까지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1) 단체표준번호
- 2) 단체표준명
- 3) 제정 연월일
- 4) 개정 연월일(개정된 경우에만 해당된다)